

## 관련 법령 (1/3)

제 1 조(목적) 이 법은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특성과 업무 특성에 맞는 예산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예산을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예산: 예산법 제 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 3 조(기본 원칙) 예산은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기본 원칙) 예산은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기본 원칙) 예산은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6 조(기본 원칙) 예산은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7 조(기본 원칙) 예산은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8 조(기본 원칙) 예산은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정부 및 공공기관의 특징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과 업무
- 예산 계획 및 집행
- 인력 운영 및 채용
- 조지문화



## 참고 - 국가법령센터([www.goyeo.go.kr](http://www.goyeo.go.kr))

제 1 조(목적) 이 법은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특성과 업무 특성에 맞는 예산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예산을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예산: 예산법 제 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 3 조(기본 원칙) 예산은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기본 원칙) 예산은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기본 원칙) 예산은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6 조(기본 원칙) 예산은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7 조(기본 원칙) 예산은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8 조(기본 원칙) 예산은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으로 한다.

## 관련 법령 (2/3)

제 1 조(목적) 이 법은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특성과 업무 특성에 맞는 예산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예산을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예산: 예산법 제 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 3 조(기본 원칙) 예산은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기본 원칙) 예산은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기본 원칙) 예산은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으로 한다.	제 6 조(기본 원칙) 예산은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으로 한다.
제 7 조(기본 원칙) 예산은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으로 한다.	제 8 조(기본 원칙) 예산은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목으로 한다.

## 관련 주요 정부 부처

- 중앙행정기관(부, 차, 청) 및 지방자치단체
- 기획재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인정보보호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행정안전부

## 관련 주요 정부 부처

(교육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국세청, 검찰청, 질병관리청...)



#### KISA (1/4)



#### KISA (2/4)



#### KISA (3/4)

#### KISA (4/4)



#### KISA (4/4)



#### KISA (1/4)

## 복습

● 첨부조칙 개정 (2026. 1. 2.-)

- ✓ 기획재정부 → 기획예산처 & 재정 경제부
-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 통합
-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 통합
-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
- ✓ 특허청 → 지식재산처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 과목 개요

### 개요

- 1)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2) 개인정보 영향평가,
- 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 체계 인증, 4) 고유식별정보 실태점검,
- 5)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6)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 7) 국경간 개인정보 처리 인증(CBPR) 등 현장 및 사례 중심 교육

### 특성

- 개인정보 관련 다양한 평가와 인증 제도·프로그램을 이해하고 평가·인증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0.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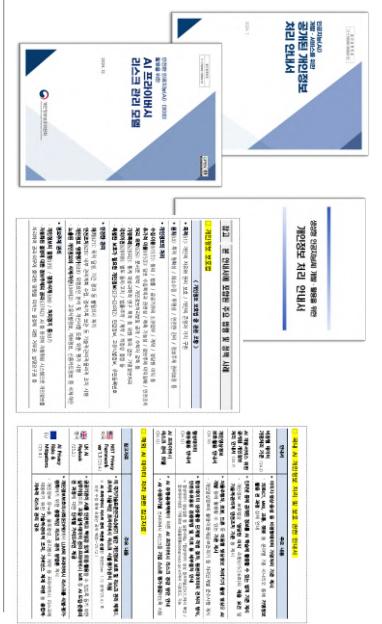
17.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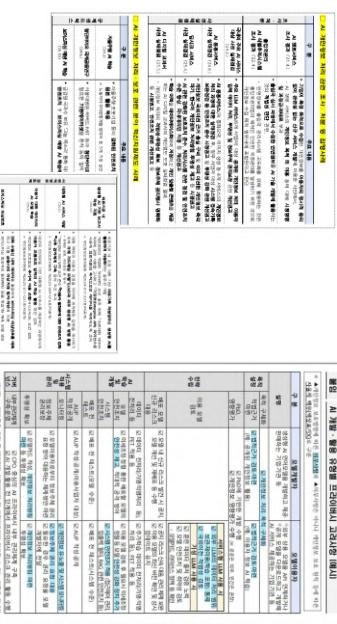
## 참고 -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정책(a)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1.

## 참고 -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정책(b)



개인정보 보호법(3)

卷之三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
- 또는 공공기관, 사업자, 법인 단체 개인 등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2)

- 개인정보의 정의(제2조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5)

개인영업과 모집(4)

개정주제목(2)

2013年1月 新規登録会員数 TOP10	
1位	東京
2位	大阪
3位	福岡
4位	名古屋
5位	横浜
6位	千葉
7位	札幌
8位	京都
9位	沖縄
10位	仙台

기이정교  
도록

- ### ●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한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권의 보호로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미증언되었을 때 고려할 수 있으나... (증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

\* 15



卷之三

卷之三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卷之三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공문집**, **한국정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卷之三

- 일반법(민법, 회사법) 관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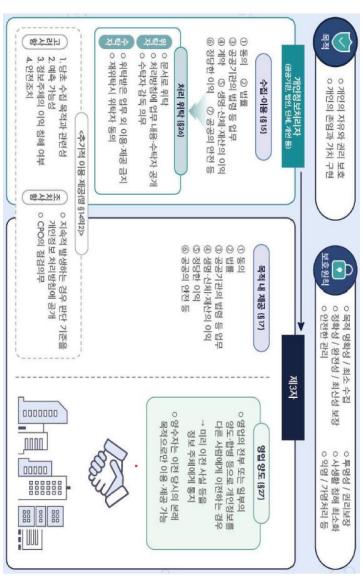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 인증 평가

- ✓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 ✓ 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 ✓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및 처리 흐름도
- ✓ ISMS-P 인증 제도 및 실사방법
- ✓ 개인정보 처리 평준 평가
- ✓ 국경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인증(CBPR, Cross Border Privacy Rules)
- ✓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 –PbD(Privacy by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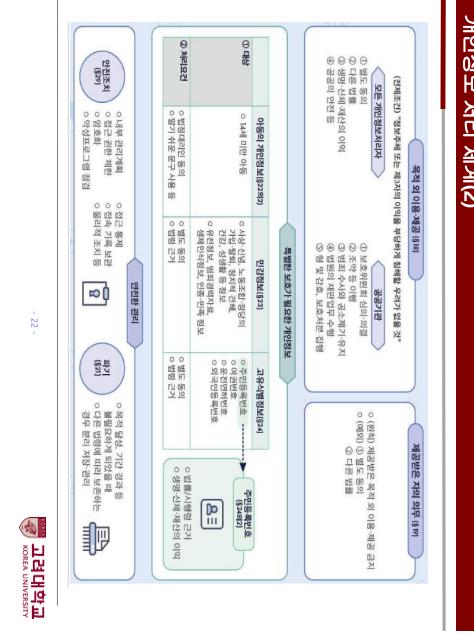
##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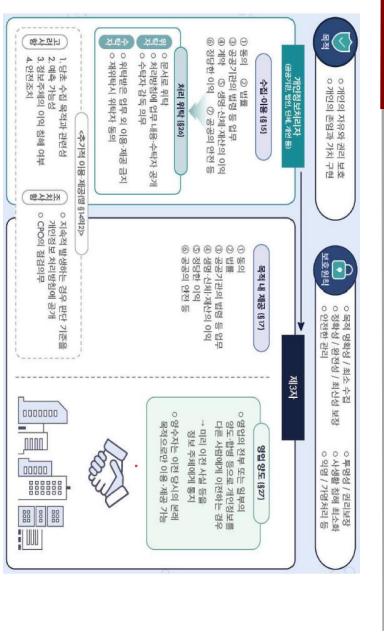
## 개인정보 처리 체계(1)



• 인증 평가 항목 :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청렴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정 기관이 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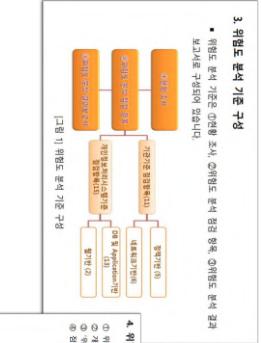


## 개인정보 처리 체계(2)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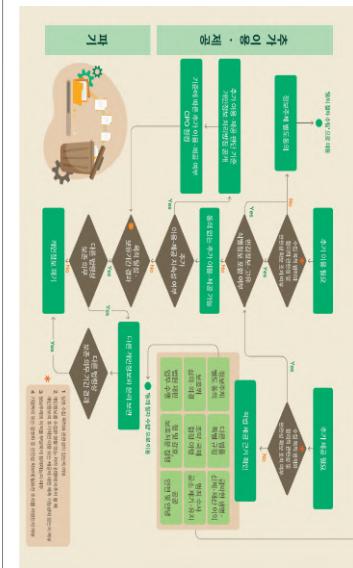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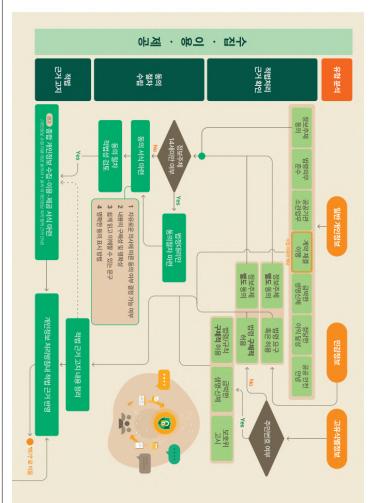
인공지능 개인정보 영향평가(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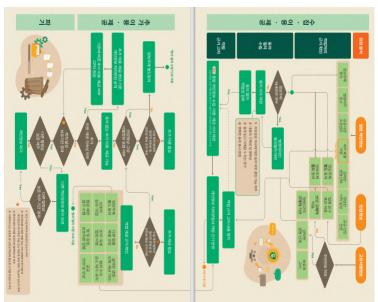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개인정보 처리 유형(2/3)



###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1/3)





CBPR 인증제도(2/2)



CBPR 인증제도(1/2)

CBPR 인증제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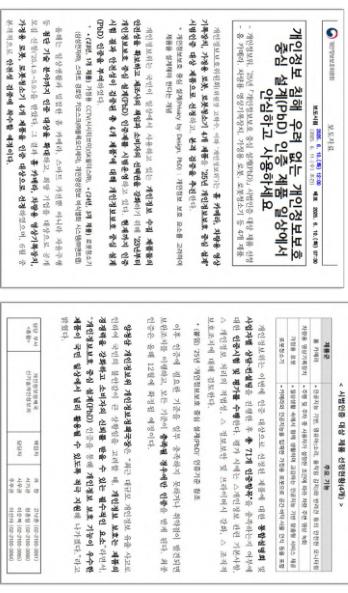


- 2017 캠페인
  - 2023 캠페인
  - 2025 캠페인



KOREA UNIVERSITY

PbD 인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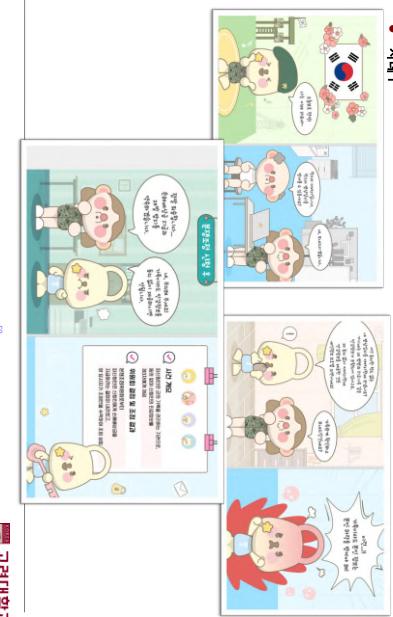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사례 (privacy.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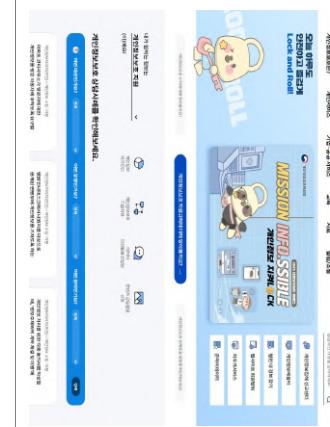
참고사항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보호)

● 자료 :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참고사항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개인정보 포털)

門至新嘉坡



분쟁조정 사례 ([privacy.go.kr](http://privacy.go.kr))



●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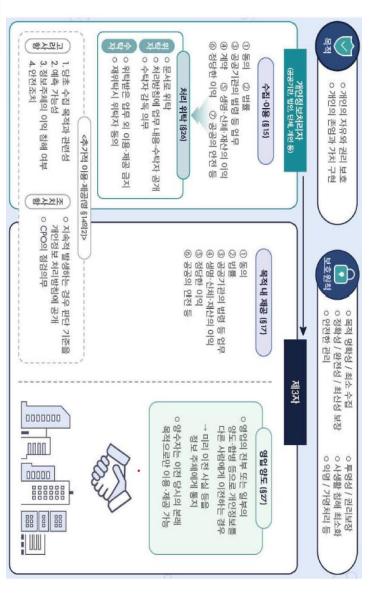


E4

고려대학교

복습 - 개인정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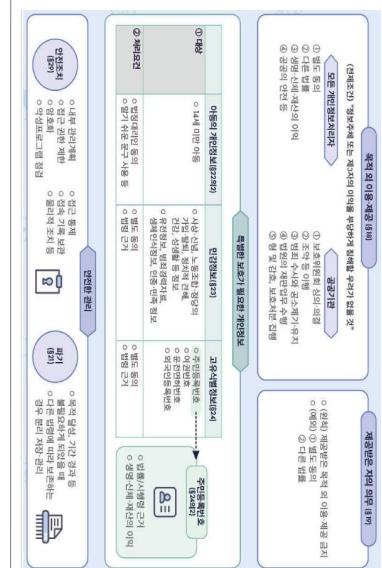
卷之三



10

۱۲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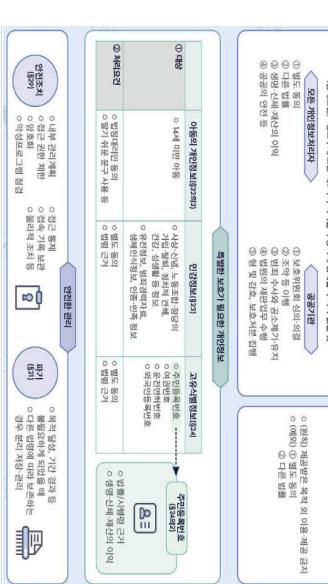
卷之三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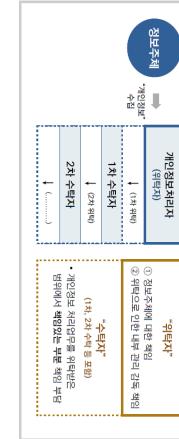
개인정보 처리 체계(2)

국적 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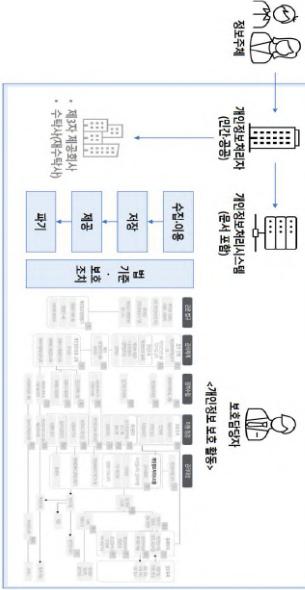
개인정보 보호법 – 위탁자, 수탁자, 제3자(1/3)

- (수탁자)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임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  
나(수탁자의 범위)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임하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3일 기준) 자수탁을 받은 수탁자 및 해당 수탁자로부터 다시 수탁을 받은 자로 수탁자 범위에 포함



참고사항

הנִזְקָנָה



서한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卷之三

卷二

법 · 졸

개인정보 보호법 – 위탁자, 수탁자, 제3자(2/3)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제도 - 법(1/3)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자체평가 정량지표(6/6)

자체평가 정량지표(5/6)

### 자체평가 정량지표(4/6)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제도(요약)

-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
  - 최근 3년간 접촉이나 2회 이상 또는 과정급 과태료 처분
  - 기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 신규 자정권 정보는 준비기간을 거쳐 차년도부터 최소 3년간 연속 평가  
\* 대상기관은 개인정보 전문성을 기준 외부 전문가 위촉(임기 1년, 연임 가능).
  - 평가단 운영: 개인정보 전문성을 기준 외부 전문가 위촉(임기 1년, 연임 가능).
  - 평가결과 활용
  - 우수기관 표창포상 및 우수사례 홍보.
  - 미등급기관 현장 컨설팅, 심의점검, 교육, 기술 지원.

예시 : 정량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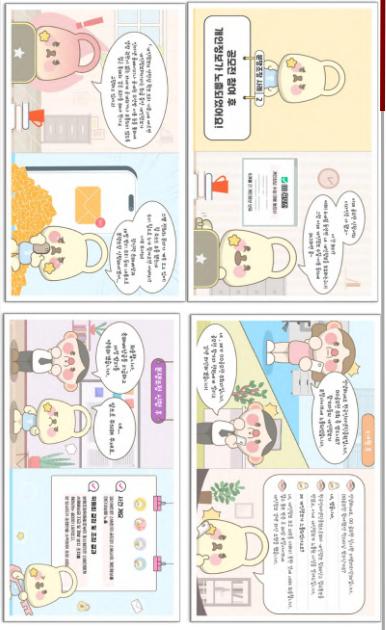
### 심총평가 정성지표



자체평가 정량지표(6/

- 24년 법 개정 후 평가대상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특수법인, 고등교육법상 학교(대학교 등)
  - 서지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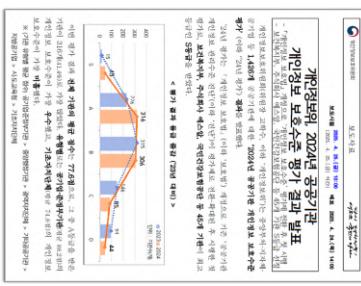
분쟁조정 사례1 (privacy.go.kr)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제도 비교

구분	2024년	2025년
정책대상	중장기 경쟁력 확보 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자본금 기업	기존 대상 + 대형 R&D 투수 벤처(KBS, EBS 등), 일부 금융·스舔 운영 기관
자체평가 지표 수	43개	40개 (3개 축소)
심증평가 지표 수	8개	7개 (1개 축소)
CIO 관련 지표	별도 항목 존재	인력조직 예산 지원에 통합
공공서비스 혁신 확보	일부 항목에 반영	전 지표에 반영
산기술 대응	신기술 가점(일부)	AI 리스크 관리 평가, 개인정보 활용 송장 디지털화 평가
사건사고 감염	서고·설정 시 일정액 감점	유출·감염·의료실 등 강용화 차동 적용
평가과 활용	정부업무평가 기관평가 반영	동일·증대한 원인 시 강화되며 폐널티 적용 가능
기관 지원	설명회, 일부 컨설팅	미집행구 대상 기관 현장 컨설팅 강화, 설명회, 우수 사례집 배포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41 -



분쟁조정 사례2 (privacy.go.kr)



분쟁조정 사례3 (privacy.go.kr)

# 1. 최근 업법 동향 및 보안 이슈



분쟁조정 사례1 (privacy.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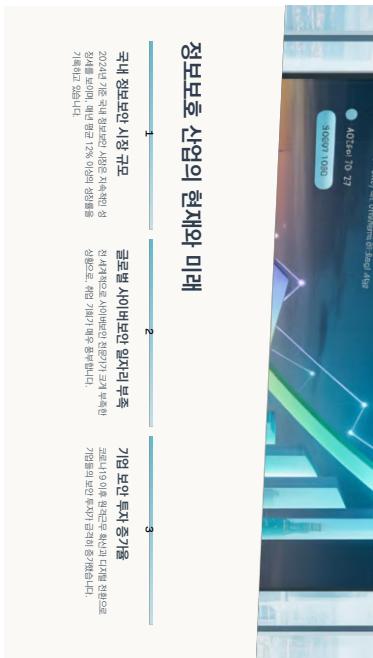
四













휴대전화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될까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의 가치



개인정보의 상대성 이해



개인정보의 상내정 이해



개인정보 전문가가 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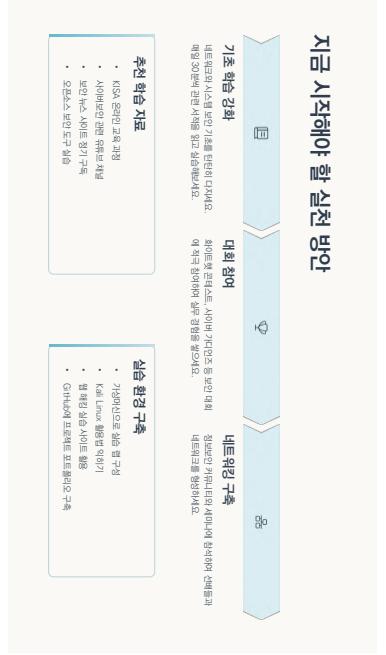


<h2>성공적인 커리어 패스</h2>
<p><b>1-5년차: 기초 다지기</b> 기본적인 보안 업무를 맡아 차례로 학습합니다. 면토를 찾아 세미나로 학습 하기도요.</p>
<p><b>2-3년차: 전문성 구축</b>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되기 위해 깊이 있는 지식을 확보합니다. 프로젝트를 주도적으 로 이끌고 보조로.</p>
<p><b>5-10년차: 리더십 발휘</b> 업무를 맡고 책임을 수령하는 역할로 성장합니다. 비즈니스 관리에서 보조를 이해 하게 됩니다.</p>
<p><b>10년 이상: 경영진 진출</b> CISO나 보안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전문 영역을 활약할 수 있습니다.</p>

<h3>우리는 어디서 근무하게 될까요?</h3> <p><b>국내외</b> 상공·IT·SKT·현대 등 국가기업과 글로벌 기업에서 다양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p> <p><b>보안 전문가업</b> 언행, 이커머스, 금융, 민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최근 기술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p> <p><b>금융권</b> 은행, 증권, 보험사의 정보학은 높은 인수율을 자랑합니다. 우리 조 금과 같은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p>



개인정보 보호법



지금 시작해야 할 실천 방안



개인정보 분야 취업 준비 전략



참고 - 공공기관의 범위(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2조)



참고=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정의

## • 개인정보

- 구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합성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수개 기획 문서로도 포함하여, 양방향기의 대화로는 개인정보들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되며,同时也是以電子形式來處理。그리고 개인정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종이 기록된 개인정보 문서가 PDF 등의 전자적인 매체로 변환될 경우 해당 PDF 파일에는 펍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1/5)

(PIA, Privacy Impact Assessment)

- 기존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종대한 현장에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행 어려울 경우 검증하는 체계적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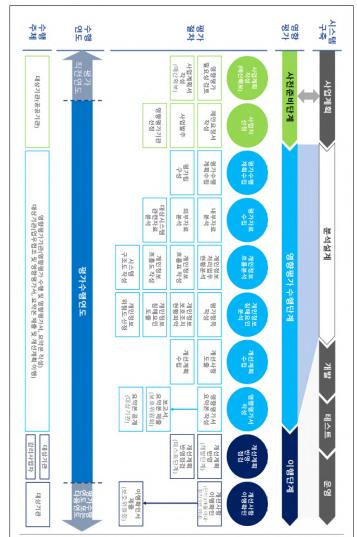
(법적 근거 및 적용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행령 제35조
  -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영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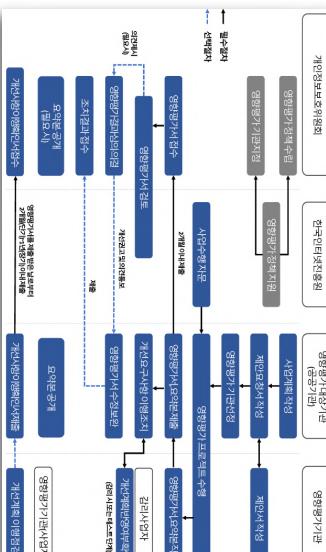
  - (50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50만명 이상)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정보주체의 수가 50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파일
  - (10만명 이상) 정보주체 수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4/5)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3/5)

■ 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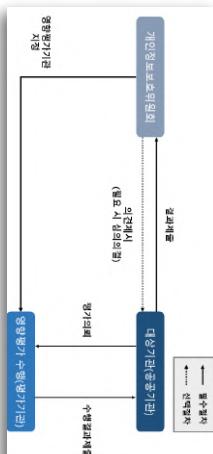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도 (2/5)

### ● (평가 수행주체)

- (평가수행 체계)**

  - 응원회가 지정한 영향평가기준에 의뢰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 및 요약문을 최종 보고서로부터 개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



참고 - 공







인공지능 개인정보 영향평가(2/2)

## 인공지능 개인정보 영향평가 분야 평가항목(1/2)

학기분과 (교시)	제작물명 (교시)	연번	평가방법(면역식)	
			평가항목	설명
5.7.1	AI 학습개발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수립 및 이행하는 경우,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까?	5.7.1	AI 학습개발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수립 및 이행하는 경우,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까?	AI 학습개발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수립 및 이행하는 경우,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까?
5.7.2	증명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민감정보, 고지·선택·동의, 시장·개인 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유무에 대해 솔직히 평가·설명·조언을 제공하고 계십니까?	5.7.2	증명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민감정보, 고지·선택·동의, 시장·개인 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유무에 대해 솔직히 평가·설명·조언을 제공하고 계십니까?	증명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민감정보, 고지·선택·동의, 시장·개인 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유무에 대해 솔직히 평가·설명·조언을 제공하고 계십니까?
5.7.3	AI 학습 프로그램 등의 제작에 따른 적법한 요구를 갖추도록 제작하고 있습니까?	5.7.3	AI 학습 프로그램 등의 제작에 따른 적법한 요구를 갖추도록 제작하고 있습니까?	AI 학습 프로그램 등의 제작에 따른 적법한 요구를 갖추도록 제작하고 있습니까?
5.7.4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처리되는 경우, 이를 예전에 제작한 AI 학습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있습니까?	5.7.4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처리되는 경우, 이를 예전에 제작한 AI 학습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있습니까?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처리되는 경우, 이를 예전에 제작한 AI 학습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있습니까?
5.7.5	AI 학습내용이 보호기간을 정하고 보호기간이 경과 하거나 AI 학습내용이 보호기간을 정하고 보호기간이 경과 했을 때에는 제거·폐기·파기·삭제·폐기·제거·폐기·제거·폐기하고 있습니까?	5.7.5	AI 학습내용이 보호기간을 정하고 보호기간이 경과 하거나 AI 학습내용이 보호기간을 정하고 보호기간이 경과 했을 때에는 제거·폐기·파기·삭제·폐기·제거·폐기·제거·폐기하고 있습니까?	AI 학습내용이 보호기간을 정하고 보호기간이 경과 하거나 AI 학습내용이 보호기간을 정하고 보호기간이 경과 했을 때에는 제거·폐기·파기·삭제·폐기·제거·폐기·제거·폐기하고 있습니까?
5.7.6	AI 학습장·공지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노출 등을 위임을 조치하였거나 위임한 대책을 제작하고 있습니까?	5.7.6	AI 학습장·공지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노출 등을 위임을 조치하였거나 위임한 대책을 제작하고 있습니까?	AI 학습장·공지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노출 등을 위임을 조치하였거나 위임한 대책을 제작하고 있습니까?

2



참고

개인정보처리자와 이익이 정보주체 권리에 우선함이 명백한 경우 예외

- 군공사기 틈틈이 빙자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로 군부 상황 설명, 선전 등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
- 전장상황에 대한 무관심 예방, 정보보안 및 목록화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법집행부도는 공공안전과 대한 유해로부터의 보호·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단 이 경우에도 군수기관은 민간인의 필요성과 상당성·합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법적·유형 수준은 배제한 인증현장 조치 노력으로 유효

참고

국내	한국주체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부
공개판 기록의 성과	<p>제3장의 민법상의 생활방식으로, 이동 경로와 터미널 및 날씨 등에 따른 차량운행 상황을 기록하는 시스템이다.</p> <p>※ 단, 운전자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된다.</p>
공개판 기록의 법률	<p>국내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부주체의 보호법으로 제3장에 기록을 수집·보유·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마련해 권리 침해 가능성이 미비한 노력을 통해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증정된다.</p>
정보수집 방법	<p>정보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가 있어야 수집·보유·이용되는 내용을 담은 법을 수립하는 정부주체의 책임임을 드러내는 데서 정보는 보호법에 포함되는 개인 정보로, 개인 정보를 드러내는 행위로 간주된다. 정보는 개인 정보로, 개인 정보를 드러내는 행위로 간주된다.</p>
정보수집 방법	<p>정보는 개인 정보로, 개인 정보를 드러내는 행위로 간주된다.</p>

15



## 인공지능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항목(1/10)

AI 시스템 학습 및 개발	<p>5.7.1</p> <p>AI 모델,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거나, 이를 충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p>
----------------	---



한국대학교  
KOREA UNIVERSITY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리스크 (6/6)

#### 4. 리스크 경감방안의 검토•도입 (mitigation)

- | [기술적 조치] 다양한 프리미엄 시장 분석 및 대응 전략  |   |
|--|---|
| [기본적 조치] 다양한 기술(PAT)의 도입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하지 않음   |   |
| 관련 인증조치  | 기술적 인증조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설(의미) 출처 : 국제 관리</li> <li>- 인증한 보관 : 폐기·방지·이용·제작·수령 및 실행</li> <li>- AI 기반 평가 및 평가 결과 확보</li> <li>- 허용되는 이용형태 및 용도 정의</li> <li>- 자동화 및 대량생산으로부터의 조치 기준 준수</li> <li>- AI 표기와 함께 표기 및 표기방법은 미만 등</li> <li>- 정부주체 고도 평안 및 조치방안 미만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데이터 전처리(데이터 소화), 기법, 응집화, 종속화기 등</li> <li>- AI 모델 학습과 학습성과를 통한 모니터링 추가</li> <li>- 입증 및 윤리 활용방법</li> <li>- 차운도로부터의 출처 및 사용처 등</li> <li>- 상세화된 활용시 기법, 일정제한 등</li> </ul> |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인증서증개인정보영향평가평가(5/10)

● 품질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법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꼭 기재한 경우  
● 공급자나 법정 등에서 정하는 소급 암호의 수령일 9월8일과 같은 경우



KOREA  
UNIVERSITY

8

인공지능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항목(3/10)

제작부문	제작부문	제작부문
제작부문	제작부문	제작부문
AI 시스템 학습 및 개발	5.7.3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일정 프로토콜 등이 제3자로 인수·이전되는 경우, 제3자에게도 개인 정보에 대한 책임은 오건을 갖는다.
제작부문	제작부문	제작부문
제작부문	제작부문	제작부문

[주요 점검 사항]

-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입력 **프로토콜 등이 적용되어 처리되는 경우, 제공자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은 투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상이어야 한다.**
  - 개인정보로 고지자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등에 따른 적법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범 제17조제4항에 따른 초기 제공

- 범 제17조제4항에 따른 초기 제공

- 범 제283조의2에 따른 초기 제공 및 제공

- 법 제83조의2에 해당하는 의료용 의약품 등

- 개인으로서 회사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조치(위약 계약, 개인정보보 치료방침 공개, 수탁자 권리·감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三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 인공지능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항목(2/10)

제작부문	제작부문	제작부문
제작부문	제작부문	제작부문
제작부문	제작부문	제작부문

[주요 점검 사항]

1.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민간정보,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보, 14세미만 이동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웹스크립트 등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누군가 해법코드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해야어야 하며, 불법 유동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8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



한국  
KOREA UNIVERSITY

- 35(1)

## 인공지능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항목(4/10)

세부분야	질의문 코드	질의문
AI 시스템 학습 및 개발	5.7.4	<p>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포함한 일련의 프로파일 등 개인정보에 대한 강의, 국외 AI 분야에 따른 법 요건 및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p>

【수요 품질 시장】

- AI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포함한 일련의 프로세스 등이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되는 형태 (제공, 처리, 분석, 보관) 이전되는 국가, 국가간에는 행정 등을 사실별이어야 한다.
- 국외 이전 유형에 따른 징벌 요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6

## 인공지능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항목(7/10)

제목	설명
A 시스템 운영 및 관리	<p>AI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AI 모델 개발 및 운영 전주제에 치중하는 한편 기업의 청년 및 유통·정보·제조·환경·융합 등 다양한 주제 등을 강의하고 이를 계기로 디자인·리야系·시공사장 등에 연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p>

1 오플소스 API

2. AI 가정용 참아제를 구현한 악함, 정보주체 권리보장 책임, 험厉체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계약서, 인선서, 사용자침해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٦



참고

3



## 인공지능 개인정보 엄격평가 평가항목(6/10)

세부분야	질의문 코드	질의문
AI 시스템 학습 및 개발	5.7.6	AI 취약점 공략에 의한 개인정보 유·노출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요 점검 사항]

- AI 시스템의 유통 특성. 윤리. 구성을 등을 고려하여 AI 취업장벽에 의한 개인정보 보유, 노출 위험을 살펴야 하며 한다.
  - 해당 AI 취업장벽에 의한 개인정보 보유, 노출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로 취업장벽을 수립하는 방법을 고지,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학습데이터를 경우,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근제한을 적용하는 등 학습데이터가 수집되는 이유를 조작하는 경우이다.



인공지능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항목(9/10)

제작자: 이동원(이동원@naver.com) | 출판처: 네이버 코리아 | 출판일: 2023년 10월 1일 | ISBN: 978-89-675-1234-5

1. 생성형 AI 서비스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생성시스템의 예상 가능한 오용을 식별하여야 한다.
2. 생성시스템의 모니터링과 같은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허용도는 이용방침' (Acceptable Use Policy; AUP)을 적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42 -



四

- 41 -



## 인공지능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항목(8/10)

제목	설명
A) 시스템 운영 및 관리	A)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 허용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1988 年

- AI 학습모델 사용하는 핵심데이터 수집, 이용 가중증 개인정보 치유권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처리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핵심데이터 수집 이용 기준은 알기 어려울 때 구체적이 명확하게 표현
  - AI 서비스에 대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유통·징정·삭제·요구 등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및 일련의 대처·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공시해야 한다.



인공지능 개인정보 영향평가(정리)

### < 인공지능(AI) 분야 영향평가 항목 주요 개정내용 >

평가분야(고시)	세부분야(고시)
주요 평가항목(안내서)	<p>■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보장            ■ 불필요한 민감정보 등 수집 방지            ■ 학습데이터 보유기간 명확화</p> <p>■ AI 취업검증 공정화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 치소화</p>
인공지능(AI) 시스템 운영 및 관리	<p>■ AI 개발 운영 주체 간 책임 명확화            ■ 개인정보 처리의 특무성 확보            ■ 성성화 AI 서비스의 허용도와 이동방법 제공            ■ 정보수사 권리보장 방안 수립 시행</p>

인공지능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항목(10/10)

서부분야	질의문 코드	질의문
AI 시스템 운영 및 관리	5.7.10	상성원 AI 시스템의 노작지침은 어떤 정부 규정, '노출' 등에 대한 신고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 보조주체와의 연동은 시 출판물에 포함된 일급 목록 등의 삽입 여부는 어떤 조치 등 양보부에 권리보정 명령을 수령,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까?

卷之三

1. 생성형 AI 서비스로 개인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경우, 생성형 AI 시스템의 보작화된 답변, 개인정보보유·노출 등에 대한 신고는 면밀하게 시행해야 한다.
  2. 정보주체에 반해 AI 출판물에 방송된 일괄 목소리 등의 삭제 요청에 관한 조치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창고



## ● 정의(§2)

### Q1. 개인의 카카오 험스케어 사진이 개인정보?



#### 평가 항목 주요 개정내용 >



분쟁조정 사례2 (privacy.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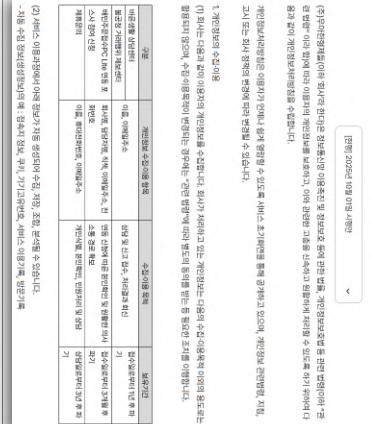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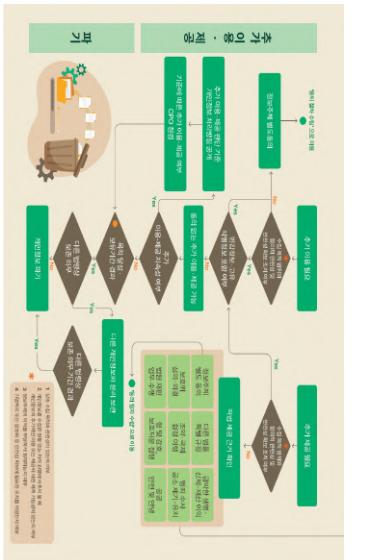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사례 실습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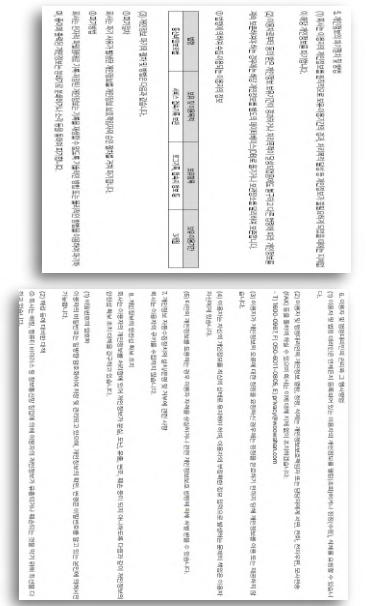
한국의 철학자들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특성과 그에 맞는 철학적 주제를 고려해 철학을 펼쳐왔다.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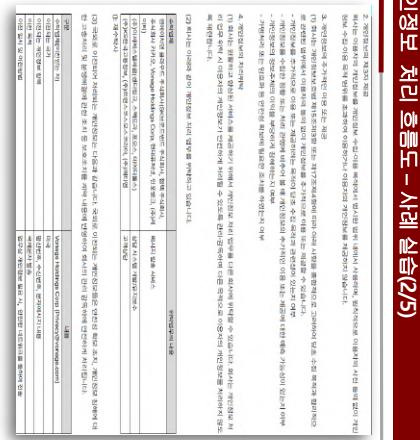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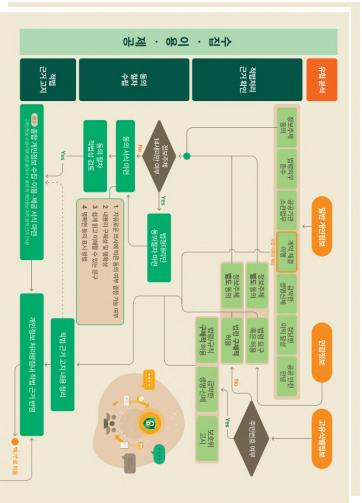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 시례 실습(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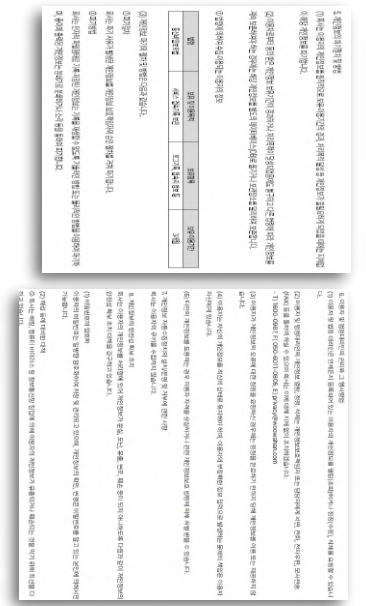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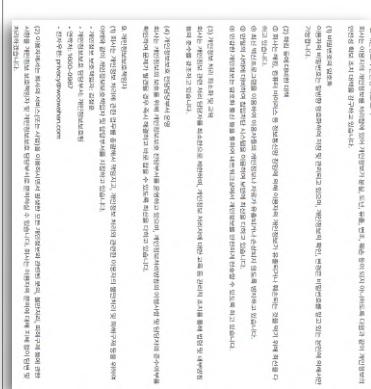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 시례 실습(2/5)



91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 시례 실습(3/5)



<제작자> 김민경  
<제작국> 대한민국  
<제작년도> 2019년  
<제작사> 케이비디오  
<장르> 드라마  
<연령별 관람가> 15세 이상  
<상영시간> 100분  
<상영장소> 미정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사례 실습 (4/5)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5/5)

## 개인정보보호 인증평가 (DTPR403) 학습 가이드

이 학습 가이드는 '개인정보보호 인증평가' 과목의 핵심 내용을 복습하고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공된 강의 자료와 참고 문서를 바탕으로 단답형 퀴즈, 논술형 문제 제안, 주요 용어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단답형 퀴즈

지침: 각 질문에 대해 2~3문장으로 간결하게 핵심 내용을 서술하십시오.

1. '데이터 3법'을 구성하는 세 가지 법률은 무엇이며,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일반법, 기본법, 특별법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도의 목적은 무엇이며, 주요 평가 대상은 누구인지 설명하십시오.
3.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제도의 목적은 무엇이며,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세 가지 요건을 기술하십시오.
4. 국내의 ISMS-P 인증과 국제 표준인 ISO27701 인증을 법적 근거 및 주요 적용 대상 측면에서 비교 설명하십시오.
5.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란 무엇이며, 흐름도를 구성하는 4가지 주요 요소는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6.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지 설명하십시오.
7.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 단계 중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서 진행되는 4가지 세부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8.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제시된 '위험도' 산정 공식을 기술하고, 위험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평가 요소를 설명하십시오.
9.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된 주민등록번호를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두 가지를 설명하십시오.
10.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동의를 받기 위해 해당 아동으로부터 동의 없이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는 무엇입니까?

### 퀴즈 정답

1.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구성됩니다. 법 적용 관계에서 일반법(민법, 형법 등)보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기본법이 우선 적용되며, 기본법보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의료법 등 특정 분야를 다루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수준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여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입니다.
3.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는 새로운 정보시스템 도입이나 중대한 변경 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조사, 예측,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수행 요건은 ①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②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연계, ③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4. ISMS-P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국내 통합 인증 체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ISO27701은 ISO 27001 기반의 국제 표준으로, GDPR 등 국제 규제 준수 및 글로벌 비즈니스 신뢰도 확보를 목표로 하는 모든 조직이 자율적으로 선택합니다.
5.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는 개인정보가 조직 내에서 수집, 저장, 이용, 제공, 파기되는 전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표입니다. 구성 요소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받는 주체(Entity), 개인정보 처리 작업 (Process), 데이터 저장소(Store), 그리고 데이터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데이터 흐름도(Data Flow)입니다.
6. 위탁은 위탁자의 업무 영역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가 '위탁자'의 이름으로 대행하며, 자제·관리권이 위탁자에게 있는 관계입니다. 반면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제3자의 업무 영역과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의 자제·관리권이 이전되는 관계로, 업무의 주된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7. 개인정보 흐름 분석의 4단계 절차는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②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③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④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순으로 진행됩니다.
8. 위험도 산정 공식은 위험도 = 자산 가치(영향도) + (침해요인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자산 가치(영향도), 침해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침해요인 발생가능성 × 법적 준거성) × 2 입니다. 세 가지 평가 요소는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자산 가치(영향도), 침해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침해요인 발생가능성, 그리고 법규 위반 여부를 나타내는 법적 준거성입니다.
9. 주민등록번호는 ①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등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그리고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입니다.

### 논술형 문제 제안

지침: 다음 주제에 대해 자신의 지식을 종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정답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1. 강의 자료에서 지적된 현행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점(최소 의무 중심 규제, 사후 제재 위주, 기술 대응 한계)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3대 핵심 추진방향과 12개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을 연관 지어 논하십시오.
2. 한 기업이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하려 합니다. AI 기술 발전과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관계를 설명하고, 해당 기업이 수행해야 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절차'를 1) AI 유형 및 용례 파악, 2) 리스크 식별, 3) 리스크 측정, 4) 리스크 경감방안 도입의 4단계로 나누어 상세히 기술하십시오.
3.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라고 가정하고, 해당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를 수행하기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하십시오. '사전준비', '영향

평가 수행', '개선계획 이행'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주요 활동과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4.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인 ISMS-P, ISO27701, PIA의 특징, 법적 근거,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십시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중견기업에게 가장 효과적인 인증/평가 전략을 단계별로 제안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5.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의 중요성과 역할을 설명하고, '대학의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을 가상 사례로 설정하여 개인정보의 흐름도(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를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각 단계에서 어떤 개인정보 항목이,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처리되는지 명확히 포함하여 기술해야 합니다.

#### 주요 용어 해설

용어	정의
개인정보 (Personal Information)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개인정보파일 (Personal Information File)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4호)
개인정보처리자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
정보주체 (Data Subject)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
고유식별정보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민감정보 (Sensitive Information)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가명정보 (Pseudonymized Information)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업무 수행, 법적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 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2)

개인정보 영향평가 (PIA)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기존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개인정보 침해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며 국내 법적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국내 통합 인증제도.
ISO27701 (국제 개인정보보호 경영 시스템)	ISO 27001을 기반으로 하는 확장형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신뢰도 확보 및 GDPR 등 국제 규정 준수를 지원한다.
PbD (Privacy by Design)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의미하며,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내재화하는 원칙을 적용한 인증제도.
CBPR (Cross Border Privacy Rules)	'국경 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인증'으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APEC 프라이버시 원칙에 부합함을 인증하여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지원하는 제도.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위탁자가 유지한 채 수탁자가 위탁자의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관계.
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행위.
위험도 (Risk Level)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 침해요인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자산 가치(영향도)', '침해요인 발생가능성', '법적 준거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시험 대비 핵심 요약

##### I. 개인정보 영향평가 (PIA) 개요 및 근거 (총론)

구분	주요 내용	근거 [소스]
발간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향평가 개요, 추진 근거, 수행 절차 등 준수 사항을 안내.	

개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운용·변경 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목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대책의 효과성을 높여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실현.	
수행 주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영향평가기관.	
추진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근거하여 수행.	

## II. 영향평가 대상 및 시점(평가 의무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은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한한다.

구분	평가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근거)	추가 내용	근거 [소스]
1. 대규모 정보 처리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 수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2. 민감/고유 식별 정보 처리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개인정보 파일 연계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개인정보 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 연계 결과 정보주체의 수가 50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파일.		
4. 운용체계 변경	기존에 영향평가를 실시한 기관이 개인정보 검색 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실시).		
평가 시점	개인정보파일을 신규 구축·운용하거나, 기존 파일의 처리 절차를 변경하거나, 타 시스템과 연계·제공하려는 경우.	대상 시스템 설계 완료 전에 수행하도록 일정 계획을 제시해야 함.	
참고 사항	종이 문서는 100만 건이라도 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전자적 처리에 한함).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 범위에 해당되어 의무 수행 대상.	

영향평가는 크게 사전준비, 수행, 이행의 3단계를 거친다.

### 1. 사전 준비 단계 (Pre-preparation)

- 사업 계획 작성: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및 사전 평가 수행 후 사업계획서 작성.
- 영향평가 기관 선정: 제안요청서(RFP) 작성 및 사업 발주를 통해 평가기관 선정.
  - RFP 작성 시, 영향평가 개선 계획의 반영 여부를 감리 또는 테스트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해야 함.
  - PIA 사업을 SI 사업에 포함하여 통합 발주할 경우,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 가능성이 커 분리 발주가 권고됨.

### 2. 수행 단계 (Execution Stage) (p. 25-56 중점)

세부 단계	주요 활동 내용	산출물 예시	근거 [소스]
1. 수행 계획 수립	평가 목적, 대상, 범위, 기간, 절차, 평가 기준 및 항목 등을 반영한 수행계획서 작성.	영향평가 수행 계획서.	
2. 평가 자료 수집	기관 내부 정책 자료 (규정, 조직도 등), 외부 정책 자료 (법규, 지침 등),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요건정의서 등) 분석.	평가 시 고려해야 할 법률·규정 목록, 사업개요서.	
3. 개인정보 흐름 분석	대상 시스템 내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생명 주기(Life-Cycle)별 이동 경로 및 현황 분석.	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4.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개인정보 보호 조치 현황 파악을 기반으로 침해 요인 도출 및 위험도 산정 (이 단계에서 평가항목을 작성함).	평가항목(평가표),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표.	

## III. 영향평가 수행 절차 (사전 준비 단계 및 수행 단계 일부)